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구직급여 수급 현황 분석*



윤정혜**

I. 서론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변동 및 2019년 제도 개편에 따른 지급금액 인상, 지급 기간의 연장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9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형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업급여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고에서는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된다. 본 분석에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직급여 중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은 제외하고 작성하였다.

* 『2019~2020 고용보험DB를 이용한 고용동향 분석』 5장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다만, 최근 자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자료추출시점의 차이로 수치상에 차이가 있다.

**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팀장 (jeong76@keis.or.kr)

II. 실업급여제도 개편 내용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상, 지급 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제도가 크게 변경되었다.¹⁾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 것이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제도 도입 이래 50%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19년 개편을 통해 처음으로 이직 전 임금 수준의 60%까지 인상되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조정되어 왔으며,²⁾ 2019년 개편 과정에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개정 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변경 전 금액(60,120원)을 적용하도록 하였다.³⁾

표 1 실업급여제도 개편 주요 내용

	변경 전(2019. 10. 1. 이전)	변경 후(2019. 10. 1. 이후)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50%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지급 기간	90~240일	120~270일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이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편집

1) 2019년 이전까지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의 제2장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 구직급여 일 상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이직자는 5만 원, 2018년 이직자는 6만 원, 2019년 1월 이후 2021년 현재까지는 6만 6천 원이다.

3) 2019년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은 66,800원으로 개정 전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은 60,120원이었다.

2019년 제도 개편은 청년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 까지로 확대되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고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 기간을 종전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였다.⁴⁾

표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0세 미만	(30일)	(60일)	(60일)	(60일)	(6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주: 1)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임
 2)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는 개정 전 대비 증가 기간임
 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편집

4)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 하였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Ⅲ. 구직급여 지급 현황

1. 구직급여 지급 현황

2020년 기준 170만 2천 명에게 1인 평균 695만 원이 지급되어 연간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11조 8천 억 원이었다.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월 지급액이 1조 원이 넘는 등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지급액은 전년과 비교하여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수급자 증가와 함께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급자 1인이 1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 58,645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었으며, 지급액 증가 대비 수급자와 지급 기간이 증가하면서 총 지급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을 보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급액 증가와 수급자 규모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월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후 1인당 지급금액의 증가율은 축소 되고 있는데 반해, 수급자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지급액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 금액

(단위: 천 명, 백만 원, 만 원, 원, 일, %,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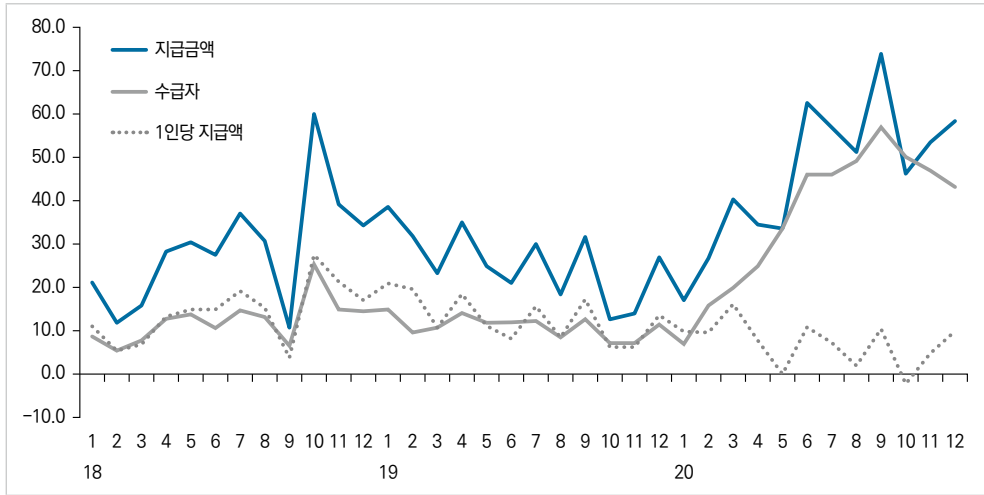
	수급자		지급금액		1인당 평균 수급 금액		평균 구직급여일액		평균 소정급여일수	
2018년	1,314	(9.9)	6,430,309	(28.5)	489	(16.9)	50,490	(13.9)	154	(0.6)
2019년	1,442	(9.8)	8,067,748	(25.5)	559	(14.3)	56,389	(11.7)	158	(2.8)
2020년	1,702	(18.0)	11,833,107	(46.7)	695	(24.3)	58,645	(4.0)	185	(16.7)

- 주: 1) 행정처리일 기준, ()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3) 실업급여 수급자는 센터별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 기준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그림 1 구직급여 지급금액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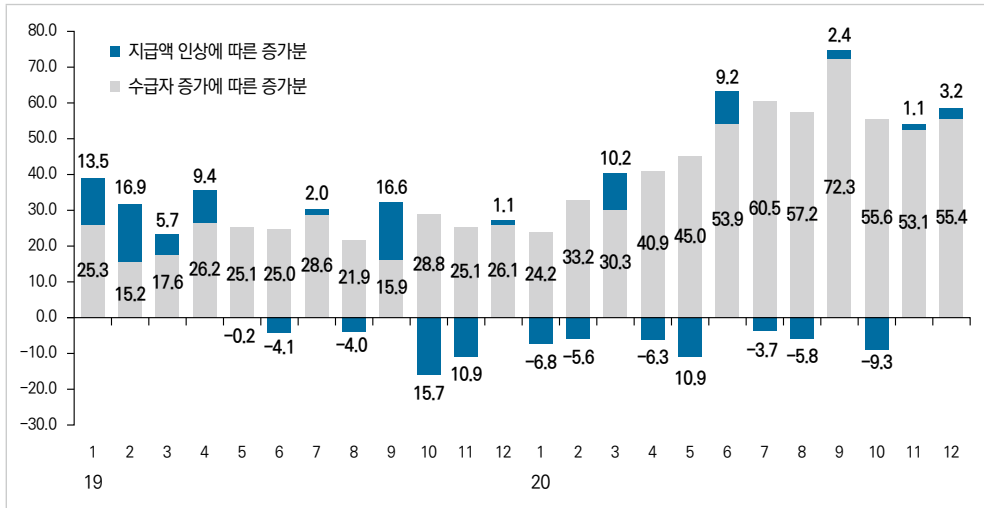
주: 1) 행정처리일 기준임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현상을 수급자 증가와 지급액 인상으로 나누어 요인 분해 해 보았다. 그 결과, 최근 지급액 증가의 주된 요인이 지급액 인상 요인보다 수급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1인당 지급액 인상에 따른 증가 요인으로 3.2%는 증가하였고, 수급자 증가로 지급액이 55.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는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안정망이 강화되면서 수급가능자가 늘어나고,⁵⁾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기업의 채용이 축소 되자 이직 후 바로 재취업을 하던 이직자가 실업 상태에 머물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5) 2019년 10월 이후 수급자 증가로 지급액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수급자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요인 분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주: 1) 행정처리일 기준임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3) 수급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전년 동월과 1인당 지급액이 동일할 경우 수급자 증가에 따른 지급금액 증가 요인으로 설명되며, 지급액 인상에 따른 증가분은 전년 동월 대비 1인당 지급액 증가에 따른 지급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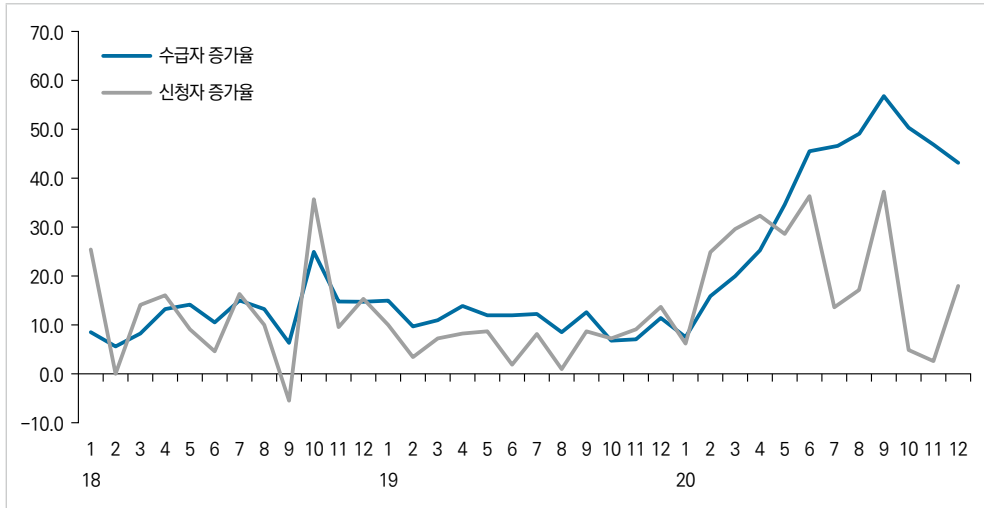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2.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요인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의 주요 요인은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였으며, 여기서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 원인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그림 3]에서 월별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율을 보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수급자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수급자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신청자 증가보다 수급자 증가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9월 구직급여를 받은 실업자는 69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57.3% 증가하면서 월 단위 수급자 증가율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제도 개편 1년이 지난 시점인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2020년 2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였고, 구직급여는 최소 120일(4개월) 이상 받을 수 있어 신청자 증가분이 매일 누적되면서 5월부터 지급자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 요인은 신청자 증가와 수급기간 증가 두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실업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증가율

(단위: %)



주: 1) 실업급여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지급자는 행정처리일 기준임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가. 신청자 증가⁶⁾

최근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는 실업자 중 신청 가능자 규모의 증가와 함께 실업자의 신청률도 함께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020년 9월 기준 실업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 규모는 약 9.8% 수준이며, 신청 가능자 중에서는 50.6%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2020년 9월 실업자는 100만 명으로 그중 고용보험 적용률과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자를 추정할 경우, 실업자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자는 약 19만 명 수준으로, 실업자 중 19.4%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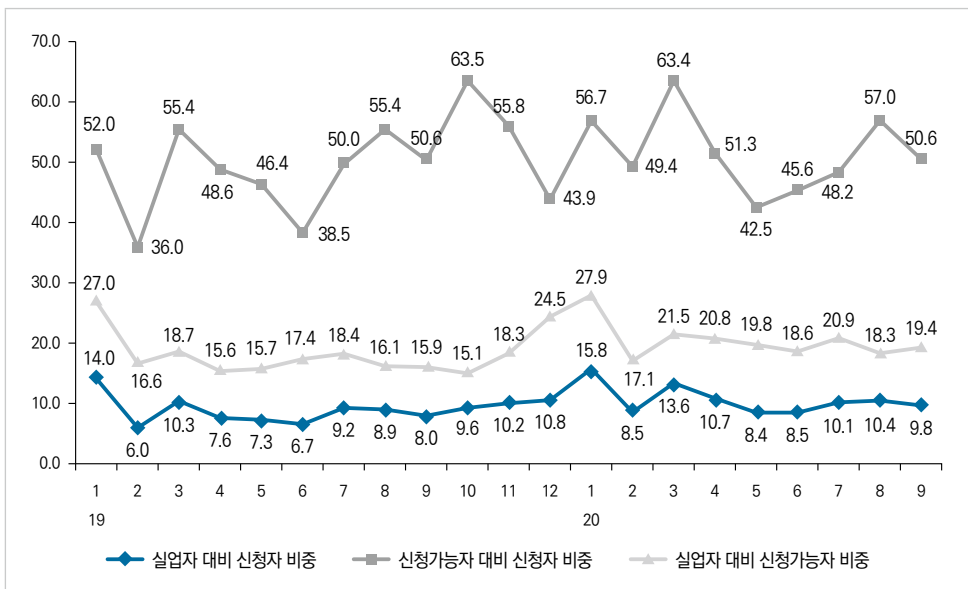
6) 자료추출시점(2021. 4. 2.)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상실자(상시근로자) 중 구직급여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청일 및 행정처리일 기준의 신청자 수와 다르며, 자료추출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최근 이직자의 경우 신청률이 과소 계산될 수 있어 신청자 분석 기간은 2020년 9월까지로 한정하였다.

7) 2020년 9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률은 52.4%(1,415만 8천 명/2,701만 1천 명),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은 37.0%(19만 2천 명/51만 8천 명)를 적용하였다. 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이직할 가능성이 더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였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자 규모는 과대(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개연성은 있다.

2019년과 비교하여 비자발적 상실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신청 가능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신청 가능자 중에서 실업급여 신청률이 높아지면서 신청자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의 경우 신청 가능자 대비 신청자 비중이 63.4%를 기록하여, 지난해 10월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2019년 10월의 경우 실업급여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신청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⁸⁾ 올 3월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실업급여 신청률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 추이

(단위: %)



주: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상실일, 실업급여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임
 2) 실업급여 신청가능자는 해당 월 실업자 수에 고용보험 적용률(피보험자 수/취업자 수×100)과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비자발적 상실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100)을 곱하여 임의로 추정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신청DB

8) 2019년 10월 1일(이직일 기준)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30일에서 최대 60일(30세 미만)까지 증가하고,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용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신청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신청자의 이직 사유를 보면, 1월은 계약 만료·공사 종료에 따른 이직자가 많은 달로 신청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이직자의 신청률이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실업급여 신청자의 이직사유 분포

(단위: %, %p)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 자 발 적 사 유	폐업, 도산	3.6 (2.7)	4.8 (26.0)	6.0 (15.7)	3.9 (-5.3)	4.1 (5.9)	3.9 (5.7)	4.2 (2.8)	4.8 (-1.2)	4.5 (15.9)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1.2 (-8.6)	47.6 (14.6)	50.6 (33.2)	57.6 (50.2)	54.5 (35.6)	54.1 (39.5)	47.3 (15.7)	52.1 (17.2)	51.1 (48.0)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2.5 (5.8)	4.4 (37.6)	3.6 (20.4)	3.4 (-0.6)	3.5 (-10.2)	3.9 (2.6)	3.7 (-3.8)	4.4 (-4.7)	4.1 (16.7)
	정년	9.9 (27.3)	3.0 (35.5)	2.2 (43.2)	2.2 (21.6)	1.4 (26.8)	1.4 (32.8)	7.1 (37.4)	2.0 (24.1)	3.1 (42.9)
	계약만료, 공사종료	49.9 (19.8)	35.3 (40.8)	33.7 (24.1)	28.6 (19.1)	31.1 (27.5)	31.0 (36.8)	32.3 (8.9)	31.0 (20.2)	31.8 (33.2)
	자발적 사유 ³⁾	2.7 (4.5)	4.8 (22.4)	3.9 (16.1)	4.2 (0.7)	5.1 (11.6)	5.4 (22.5)	4.8 (8.5)	5.4 (7.5)	5.0 (26.0)
기타 ⁴⁾	0.1 (16.7)	0.1 (65.6)	0.1 (171.4)	0.1 (109.5)	0.2 (43.6)	0.4 (477.9)	0.6 (547.8)	0.3 (220.9)	0.3 (369.4)	

주: 1)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이며, 실업급여 신청자 중 상시(상용+임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2) ()는 전년 동월 대비 비중 증감임

3)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4) 기타는 고용보험 비적용, 이종고용, 분류 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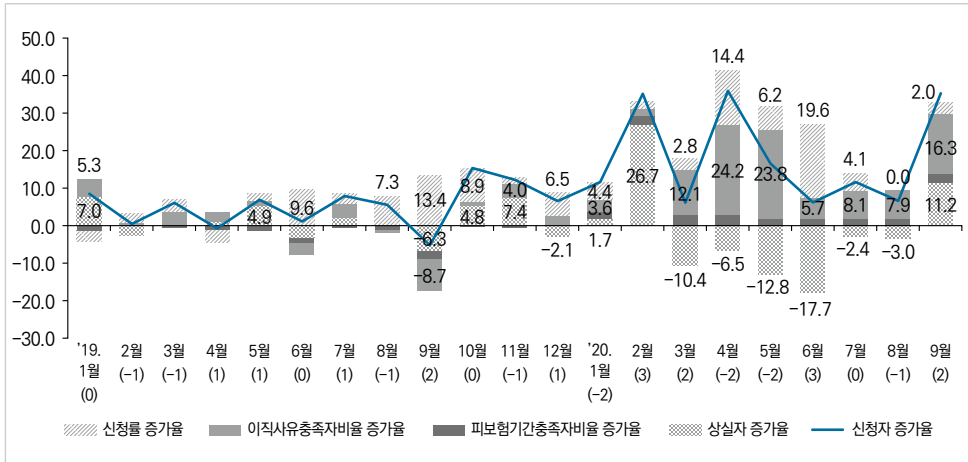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신청DB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월별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율을 요인 분해해 보았다. 2020년 2월 기준 상실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대비 35.0%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을 요인 분해하면 상실자 증가의 영향이 26.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월은 전년보다 업무 일수가 3일 더 많아 전년과 비교해 상실 신고된 피보험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통계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로 월 단위 업무 일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월별 증감을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는 비자발적 상실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4~5월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비자발적 상실자 급증에 따른 결과(14.8%)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⁹⁾ 지난해 실업급여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신청 가능자(이직사유 및 피보험기간 충족) 중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자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6월에는 이직사유 충족자 비율 증가 요인은 축소되고 신청률 증가 요인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점인 4월, 9월에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신청자의 증가는 비자발적 상실자(이직사유 충족자)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직 후 바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로 요약된다.

9)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비자발적 상실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9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24.7%)하였다. 신청자 증가율을 요인분해하면 상실자 증가율 9.2%, 피보험기간 충족자 비율 증가율 -5.5%, 이직사유 충족자 비율 증가율 14.8%, 신청률 증가율 5.3%로 이직사유 충족자 비율의 증가가 신청자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5 월별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율 요인 분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주: 1)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 축의 ()는 전년 동월 대비 업무일수 차이임
 2) 피보험자 중 상사(상용+임시)근로자만 해당
 3) 피보험기간 충족자 비율은 상실자 중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실자의 비중임
 4) 이직사유 충족자 비율은 피보험기간 충족자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비중임
 5)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여 자료 추출 시점 이후에 신청자가 반영될 경우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DB-수급자격 종합통계DB 연계 자료

나. 수급기간 증가

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는 신청자 증가와 함께 수급 가능기간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제도 개편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경우 전보다 평균적으로 구직급여를 30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평균 소정급여일수는 185일로 전년과 비교하여 평균 26일 더 길어졌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평균 소정급여일수 분포를 보면, 개편 내용의 적용을 받는 '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경우에도 2019년보다 2020년 들어 120일 비중은 줄고 150일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수급자의 구성 변화, 즉 피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연령대의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¹⁰⁾

10) 2020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9세 이하 16.5%, 30~50세 미만 38.3%, 50세 이상 45.2%였으며, 2019년은 29세 이하 15.7%, 30~50세 미만 39.9%, 50세 이상 44.4%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30~50세 미만 비중은 줄고, 청년과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5 구직급여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분포

(단위: %, 일)

		소정급여일수						평균소정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018년		21.4	16.3	22.5	16.4	14.3	9.0	154
2019년	'19.10.1. 이전 이직	20.7	15.6	22.3	16.6	14.9	9.9	158
	'19.10.1. 이후 이직		20.1	20.5	22.9	16.7	13.1	
2020	'19.10.1. 이전 이직	10.2	11.6	21.5	20.3	21.2	15.1	185
	'19.10.1. 이후 이직		14.8	21.7	23.4	17.0	13.8	

주: 1) 행정처리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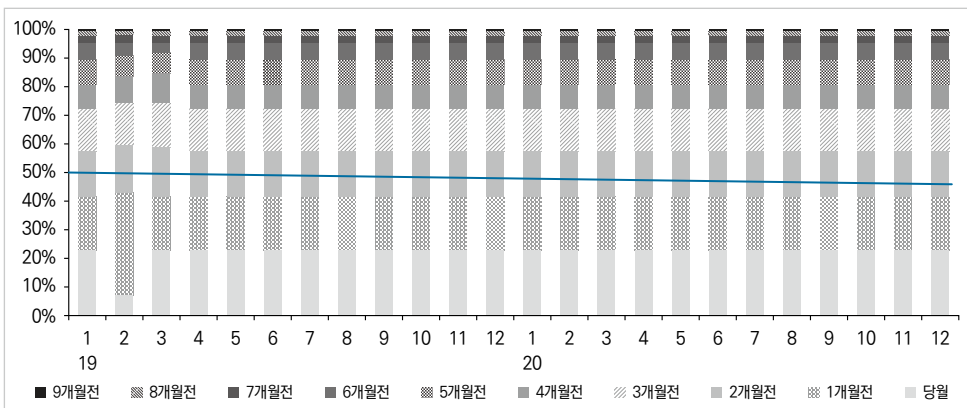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지급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2020년 9월을 기준을 보면, 수급자 중 4개월 이전, 즉 5월 이전에 신청한 수급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최소 수급 기간인 4개월(120일) 이상 수급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 중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이전이라면 수급이 종료될 수급자가 최소 1개월씩 더 수급하게 되면서 수급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지급금액 증가로 이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시기

(단위: %)



주: 1) 행정처리일 기준임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IV. 구직급여 수급 유형

2019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면서 실업자 개인이 받는 구직급여액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직급여 인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구직급여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직급여 임금대체율을 살펴보았다.¹¹⁾ 2020년 수급자의 평균 구직급여일액은 58,645원으로 임금대체율은 62.1%였다.¹²⁾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60%(50%) 적용자 비중은 2.7% 수준에 불과하며, 수급자 중 78.5%가 하한액(60,120원, 8시간 기준), 18.8%는 상한액(66,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을 보면, 구직급여 임금대체율은 개편된 구직급여액을 적용받는 2019년 10월 1일 이직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¹³⁾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지급 수준의 향상(50% → 60%)으로 하한액 적용자 비중이 줄어들고 퇴직 전 임금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임금대체율이 낮은 상한액 적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하한액 수준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었으나, 하한액 적용자의 임금대체율은 오히려 84.0%로 증가하였다. 이는 계산된 하한액이 개편 전 하한액(60,120원,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개편 전 하한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퇴직 전 평균임금일액 대비 구직급여일액 비율로 계산된다.

12) 임금대체율은 해당 월의 행정처리상 수급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급자격인정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통계연보에서 제공되는 임금대체율과 기준일, 분석 대상이 달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13) 2020년 11월부터 하한액 적용자가 증가하면서 임금대체율이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사업 종료에 따른 이직자가 급증하였고, 이들 중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하한액 적용을 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구직급여 수급자의 임금대체율 현황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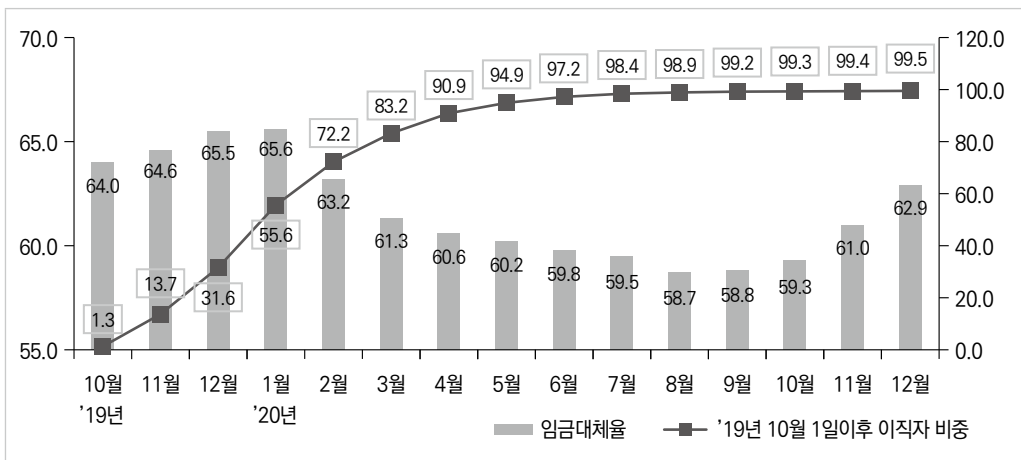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구직 급여일액	대체율	비중	평균구직 급여일액	대체율	비중	평균구직 급여일액	대체율	비중
전체	50,490	60.1	100.0	56,389	64.2	100.0	58,645	62.1	100.0
상한액 ⁴⁾	55,256	30.3	17.0	63,220	31.7	14.1	65,961	32.2	18.8
60% 적용 ⁵⁾	53,390	50.0	2.2	59,243	51.0	2.2	61,286	58.7	2.7
하한액 ⁶⁾	49,408	78.7	80.8	55,168	80.7	83.7	56,801	84.0	78.5

- 주: 1) 행정처리일 기준임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3) 임금대체율=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일액×100, 평균임금일액이 0인 경우와 임금대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보험DB상 기입 오류 등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산출함
 4)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적용자는 기초임금일액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보다 커 상한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함
 5) 구직급여일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2019. 10. 1. 이후 이직자) 또는 50%(2019. 10. 1. 이전 이직자)인 경우에 해당함
 6)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적용자는 기초임금일액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직일 기준 최저임금의 90%(2020. 10. 1. 이후 이직자는 80%, 최저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그림 7 구직급여 수급자의 임금대체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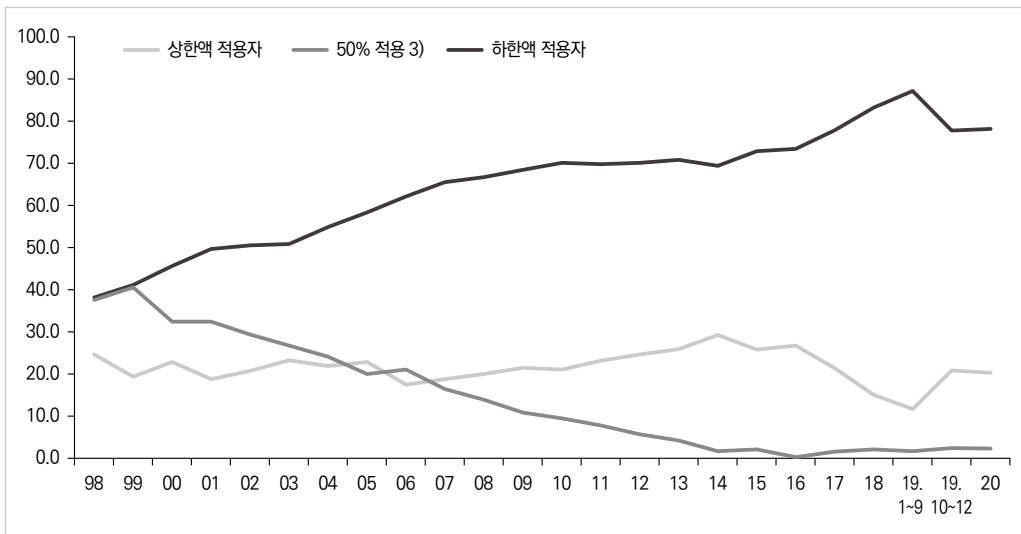
- 주: 1) 행정처리일 기준임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3) 임금대체율=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일액×100, 평균임금일액이 0인 경우와 임금대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보험DB상 기입 오류 등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산출함
 4) 2020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비중은 해당 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이직일자가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수급자의 비중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지급DB

제도 개편 내용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수급자 유형을 이직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았다. [그림 8]은 1998년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적용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상한액은 고정되어 상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 비중도 크지는 않으나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한액이 4만 원으로 고정되었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상한액 적용자 비중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50% 정률 수급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면서 하한액 적용자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상한액 적용자 비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실업급여 자격인정자의 구직급여일액 유형 분포 추이

(단위: %)



- 주: 1) 이직일자 기준이며, 자영업자는 제외함
- 2)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적용자는 기초임금일액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보다 커 상한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함
- 3) 구직급여일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2019. 10. 1. 이후 이직자) 또는 50%(2019. 10. 1. 이전 이직자)인 경우에 해당함
- 4)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적용자는 기초임금일액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직일 기준 최저임금의 90%(2020. 10. 1. 이후 이직자는 80%, 최저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수급자격인정DB

지난해 실업급여제도 개편 이후에는 이와 반대로 하한액 비중은 감소하고 상한액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이직자 5명 중 1명꼴로 상한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편 전과 비교해서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직자의 규모도 증가하였지만, 상한액이 6만 6,000원으로 동일한데도 상한액 적용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수급기간 연장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총액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9]를 보면, 지급 기간 연장으로 구직급여일액에 상관없이 지급기간은 30일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상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임금은 근속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의 구직급여일액 유형 분포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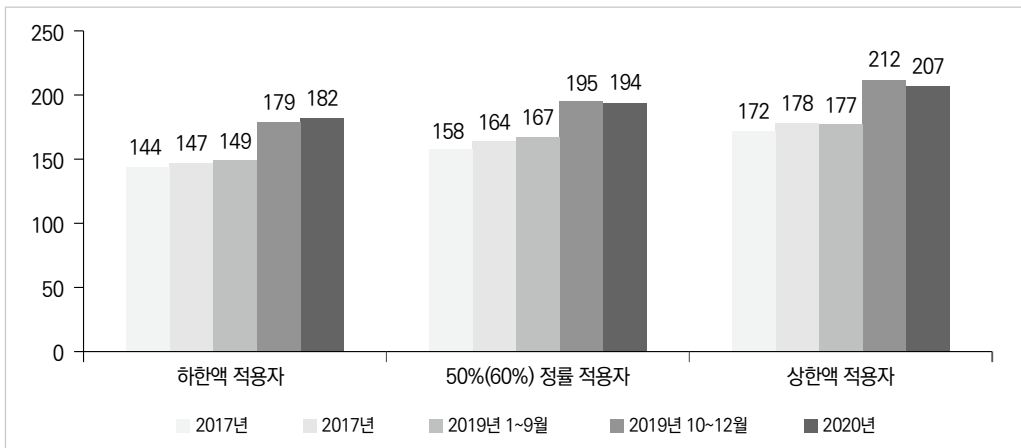
	하한액	50%(60%) 적용	상한액	전체
2019년	968 (83.1)	26 (2.2)	171 (14.7)	1,166 (100.0)
1~9월	662 (86.2)	15 (2.0)	90 (11.8)	767 (100.0)
10~12월	306 (76.9)	11 (2.7)	81 (20.4)	398 (100.0)
2020년	1,013 (77.2)	37 (2.8)	263 (20.0)	1,313 (100.0)

주: [그림 8]과 동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수급자격인정DB

그림 9 구직급여일액 유형별 평균 소정급여일수

(단위: 일)



주: [그림 8]과 동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수급자격인정DB

V. 결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되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20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을 맞으면서 실업기간 소득 보전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월 실업급여 지원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지원 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 수준 인상(50→60%)과 지급기간 연장(90~240일→120→270일),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등 실업급여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본 고에서는 최근 구직급여 지급금액 증가 현상을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코로나19 확산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수급자 증가와 함께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특히 2020년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지급액 인상 요인보다 수급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 요인은 신청자 증가와 수급기간 증가 두 요인으로 나뉜다.

피보험자격 상실자 자료와 구직급여 신청자 자료를 연계하여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을 요인 분해한 결과,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위축,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신청률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 개편으로 구직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평균적으로 1개월씩 증가하면서 수급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지급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의 신청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을 받은 시기('20.3~4월, 9월)에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2020년 연말 일자리 사업 종료에 따른 상실자 급증과 3차 확산의 영향을 받으면서 2021년 1월에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2020년 들어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우려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금액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청년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이들을 고려할 때, 최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금액의 증가는 취업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진희·윤정혜·최기성(2016).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고용정보원.
- 윤정혜(2020).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 및 증가 요인 분석, 『고용동향브리프』, 2020년 3호, 한국고용정보원.
- 윤정혜·박진희·정한나·이정아·박세정·남예지(2020). 『2019-2020 고용보험DB를 이용한 고용동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